

**1. 설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
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?**

- 2.15~2.18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(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카드 등)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.1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, 2.19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됨
-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기 때문에,
 -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(예: 2.14일 상환)

2. 2.15~2.18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?

- 2.15~2.18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2.1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, 2.19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

3. 2.15~2.18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?

- 2.15~2.18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.19일에 설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
- 또한,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(2.14일) 에도 찾을 수 있음

4.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.15~2.18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?

-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, 2.15~2.18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2.1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
- 고객이 원하는 경우 2.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

5. 2.15~2.18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?

- 2.15~2.18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.19일에 출금 처리됨
 - * 자동납부 : 요금청구기관이 물품·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(예: 보험료, 휴대폰 요금)
- 다만,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

6. 2.14~2.18일 중 어음, 수표,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?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?

- 어음·수표·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.14~2.18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·수표·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.19일 이후 가능
-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(종이)어음, 당좌수표의 발행·배서는 가능하나,
 -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,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

7. 2.15~2.18일 중 부동산거래,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
-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,
 -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
- 2.15~2.18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·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·거래 역시 미리 송금(거래)일을 조정할 필요

8. 2.15~2.18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
- 2.15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
 - *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~3영업일 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2.9일 신청시 2.14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,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- ** 특히,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등의 경우 통상 지급 7영업일 전 지급신청이 필요한 바 금융회사에 사전에 문의·협의

9. 2.15일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- 주택연금 지급일이 2.15~2.18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.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 예정
 -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.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2.14일 찾으실 수 있음

10. ATM, 인터넷 뱅킹,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,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?

- 자동화기기(CD/ATM) 인출한도, 인터넷뱅킹·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·고객별로 상이함
 - 따라서,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·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함
 - 인출·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필요

<참고> 관련 법령상 최대 인출·이체 한도

구 분		1회 이체한도	1일 이체한도
현금카드	인출한도	100만원	600만원
	이체한도	600만원	3,000만원
텔레뱅킹	개인	5,000만원	2.5억원
	법인	1억원	5억원
인터넷뱅킹	개인	1억원	5억원
	법인	10억원	50억원
모바일뱅킹		1억원	5억원
메일뱅킹		1,000만원	5,000만원

※ 다만, 법령상 인출·이체한도와 달리 금융회사가 자체 회사별 한도를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

11. 2.15~2.18일 중 보험금 지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?

-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,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

※ 예시

- ① 생명보험,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, 다만 공휴일인 2.15~2.18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2.19일 이내 처리 가능 → 사전 협의시 2.14일 지급도 가능
-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

12. 2.15~2.18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,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?

- 2.15~2.18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·DLS는 상환금액을 2.19일에 지급받을 수 있음

13. 2.15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,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?

- 2.15~2.18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.1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

※ 예시

- ① (사례1)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, 2.13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.15일이 아니라 2.19일로 순연
- ② (사례2)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, 금, 배출권의 경우 2.14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2.14일 당일 수령
- ③ (사례3)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, 2.14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.15일이 아니라 2.19일로 순연

14.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2.15~2.18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?

□ 신보는 2.15~18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

- ① (신규보증)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, 그 밖의 기업은 2.19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
- ② (기한도래) 개별 영업점이 2.15~18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2.19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조치

15. 신보의 설 자금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?

□ 신보는 상반기 신규보증공급액의 약 9% 수준인 4,940억원을 설 기간에 공급할 계획

- 이는 지난 2년간 설 명절 자금공급 실적과 예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치로, 명절기간 기업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

16.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?

17일부터 기업은행,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

* 지원기간 : 2018. 1. 17 ~ 3. 5.

- (기은) 원자재 대금결제,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지원하고,
 -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, 0.3%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
- (산은)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.5%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

17.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?

신보는 설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금공급을 집중하고,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

-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, 보증비율 등을 차등하여 우대 지원 받을 수 있음

* (예) 수출중소기업: 보증료 0.2~0.3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
창업중소기업: 보증료 최대 0.7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

18.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?

- 기업은행에서 설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할 예정
 - 2.14~15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
 - * 신권교환 외에도 자동화기기(ATM)를 통한 간단한 제신고 서비스 제공

19.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?

-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영세·중소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